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. 3. 23 선고 2020가단5800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명운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호

변론 종결 2021. 3. 9

판결 선고 2021. 3. 23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피고가 2014. 7. 29. C에게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고 한다)를

매수하여 2014. 8. 1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,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을 신축하여 2014. 8. 1.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, 한편 C가 2010. 4. 21. 이 사건 토지에 D조합을 근저 당권자와 지상권자로 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각각 설정한 사실, D조합이 위 근저당 권 등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, 원고가 2020. 7. 8.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판사 김수정

별지